「5월 청렴교육」 결과 보고

☐ 추진개요

○ 부 서 명 : 주차시설운영처 본사(운영팀,주차정보팀,시설팀)

○ 교육일시 : 2020. 5. 7. (목)

○ 교육장소 : 서면교육 대체

○ 참석인원 : 총 35명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서면교육(이메일)으로 대체

○ 교 육 자 : 주차시설운영처장

☐ 교육내용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1. 위반에 대한 처벌수준 :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100만원 이하의 경우 :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 등 수수시 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 부과
- 100만원 초과의 경우 :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공직자 가족이 금품 등을 받은 것을 알고도 반환, 인도하지 않은 경우 처벌

2.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절차 :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안 경우 포함)

대처법 : 1.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
2. 수수 금지 금품들을 제공자에게 반환 혹은 거부 의사 표시
3. 받은 금품등이 멸실, 부패, 변질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인도 (신고, 인도는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가능)

❑ 서명부 및 교육사진

5월 본사 청렴간담회 관련 안내(서면교육으로 대체)

보낸이 : 석지수 | 주소록추가

받는이 : 이용노, $+주차정보팀, 류영민, 윤여진, 천소은, 김우리, 노혜림, 박건규, 이유성, 장동호, 김다솔, 석지수, 김성희, $+시설팀

참조인 :

안녕하세요, 운영팀 석지수입니다.

5월 청렴간담회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교육으로 대체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에 대한 처벌수준 :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100만원 이하의 경우 :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 등 수수시 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 부과
- 100만원 초과의 경우 :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공직자 가족이 금품 등을 받은 것을 알고도 반환, 인도하지 않은 경우 처벌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절차 :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안 경우 포함)

대처법

1. 관장에게 서면 신고

2. 수수 금지 금품들을 제공자에게 반환 혹은 거부 의사 표시

3. 받은 금품등이 멸실, 부패, 변질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인도

(신고, 인도는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가능)

교육사진(서면교육으로 대체)